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15 949
결재일자	2016.5.26.
공개여부	부분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관리국장
양미경	代이혜숙	김귀철	05/26 고한석
협 조			

<p>2016년 제2회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</p>
--

2016.5.25.

강 북 구
(민원여권과)

2016년 제 2회

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보고

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2016년 제2회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I 추진근거
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
-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9조
-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6조

II 심의회 개요

- 일 시: 2016. 5. 25.(수) 10:00
- 장 소: 행정관리국장실
- 참 석
 - 위 원 (재적위원 7명 중 5명 참석)
 - 행정관리국장(위원장), 감사담당관, 민원여권과장
 - 김선정 위원, 정수연 위원
 - 관계공무원
 - 주관부서: 도시계획과장
- 안 건: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최초 사업시행 인가시 사공 설계도면 일체 비공개 결정 건 (도시계획과)

III

심의 결과

의결내용: 비공개 결정

의결사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(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)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이며,
- 개인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,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, 법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3호,제6호,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.

- 붙임 1. 심의의결서 1부.
2. 회의록 1부. 끝.